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일반보증 대위변제 (2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0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일반보증 대위변제	1,360,862	1,951,130	1,951,130	2,308,815	2,244,443	293,313	15.0

4. 사업목적

○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설립(1976.6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보증 이용 기업 및 채권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신용보증신청·상담	…	기업체의 신용보증 이용신청(전산입력) → 담당자 배정 → 기업개요 등 보증진행가능여부 상담
↓		
신용보증신청접수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신 용 조 사	…	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상황·기술력 등을 조사
↓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주채무불이행	…	피보증기업이 상환기일에 주채무 미상환 (부도, 연체, 휴·폐업 등)
↓		
보증채무이행청구	…	채권기관에서 채무보증인 지위에 있는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		
보증채무이행	…	보증계약에 따른 주채무 취급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		
구상권행사	…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사 업 명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24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유동화회사 보증대위변제	157,967	256,055	256,055	181,211	181,211	△74,844	△29.2

4. 사업목적·내용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기관(유동화업무수탁은행)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 선순위 유동화증권 만기도래 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기초자산(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이 상환되지 않아 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CBO보증 시행 ('00. 7. 1)
-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CLO 보증제도 시행 ('00. 12. 26)
-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기관 대출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시행 ('03. 8. 5)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지침」(금융위원회)에 의거 P-CBO보증과 중소·중견P-CBO보증 계정 통합 ('08. 10. 14)
- 신보법 개정으로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에 추가 ('09. 2. 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보증 이용 기업 및 채권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간사회사선정	…	증권사로부터 제안서 접수, 제안서 및 발행실적 평가
↓		
참여기업 모집 및 보증신청	…	회사채 발행 또는 대출희망 기업을 주간사가 모집, 보증신청서 접수
↓		
POOLING 작업	…	개별기업의 신용도 및 발행한도 심사, POOL의 분산도(업종별, 기업별, 계열별) 등 심사
↓		
보 증 심 사	…	SPC의 예상현금흐름 검토, 유동화증권 발행조건(금리,후순위채 비중 등) 심사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	선순위증권: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후순위증권: 발행기업에 매각
↓		
보증채무이행청구	…	기초자산 부실화 규모가 후순위채금액 및 잉여현금을 초과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부족자금을 유동화업무수탁은행이 대지급(신용공여) 하고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		
보증채무이행	…	보증계약에 따른 주채무 취급절차의 적정성등을 검토 하여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		
구상권행사	…	대위변제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부실 발생기업에 대하여 SPC를 통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사 업 명
(3) 보증료환급 (24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3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환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보증료환급	77,771	82,100	82,100	100,278	100,278	18,178	22.1

4.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 만기일 이전에 보증이 해지되어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이후 분을 해당기업에 환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무적 지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 제12조(보증료 등)**

④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용보증서 발급한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납보증료 전액 환급
2.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환급

가. 신용보증서 발급일과 신용보증관계 성립일이 다른 경우: 신용보증관계 성립일까지의 수납 보증료 환급. 다만,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

나. 보증 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 소멸일 다음 날부터의 보증료를 환급

다. 정부의 손실보전대책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신보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해진 보증료를 환급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증료징수	…	신용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수납
↓		
신용보증해지	…	주채무상환기일 이전에 신용보증부 주채무 해지
↓		
보증해지통지서 접수	…	채권기관으로부터 주채무해지 통지서 접수
↓		
보증해지 및 보증료환급	…	보증해지 및 보증해지 익일부터 보증기일까지 선취한 보증료 환급

사 업 명
(4) 구상권관리 (24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구상권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구상권관리	58,029	74,343	74,343	112,444	107,831	33,488	45.0

4. 사업목적·내용

○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신용보증지원, 구상권회수)을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채권보전, 소송, 공탁비용 등으로 대부분 법정 수수료율 또는 계약에 의한 의무적 지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구상권의 행사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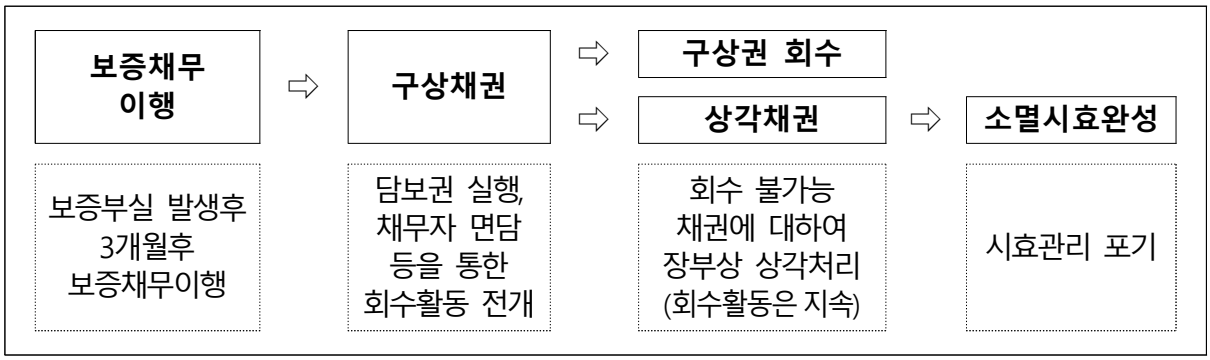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업무용건물 (24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5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업무용건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업무용건물	33,327	5,025	5,025	25,595	5,025	-	-

4. 사업목적·내용

○ **(업무용건물 취득)** 성장예상 지역 내 전략적 입지를 선점하고, 과다한 임차보증금·임차료가 발생중인 영업점 이전을 위해 자가점포 매입 → 임대인의 과다한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요구에 기인한 영업점의 빈번한 이전에 따라 수반되는 소모성 경비(이전 및 공사비용 등) 절감 및 고객불편 해소

○ **(업무용건물 보수공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 중 보수공사로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 실시 → 보수공사로 안전관리상 문제점 해소,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유지관리비 등 절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재산의 관리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경영지도 (243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7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경영지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경영지도	7,039	12,020	12,020	17,798	15,920	3,900	32.4

4. 사업목적·내용

○ **(컨설팅)** 중소기업에 창업・경영・특화컨설팅, 창업지원 및 기업연수 실시, 잡매칭, 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기반 혁신형 기업(Inno-Biz)과 차별화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Main-Biz)을 발굴·육성

○ **(창업종합지원)** 창업기업 육성플랫폼(Start-up NEST)을 통한 창업상담부터 교육, 보증, 컨설팅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

○ **(신용카드 수수료)** 보증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카드사에 수수료 납부

○ **(위탁보증 수수료)** 보증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에 수수료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경영지도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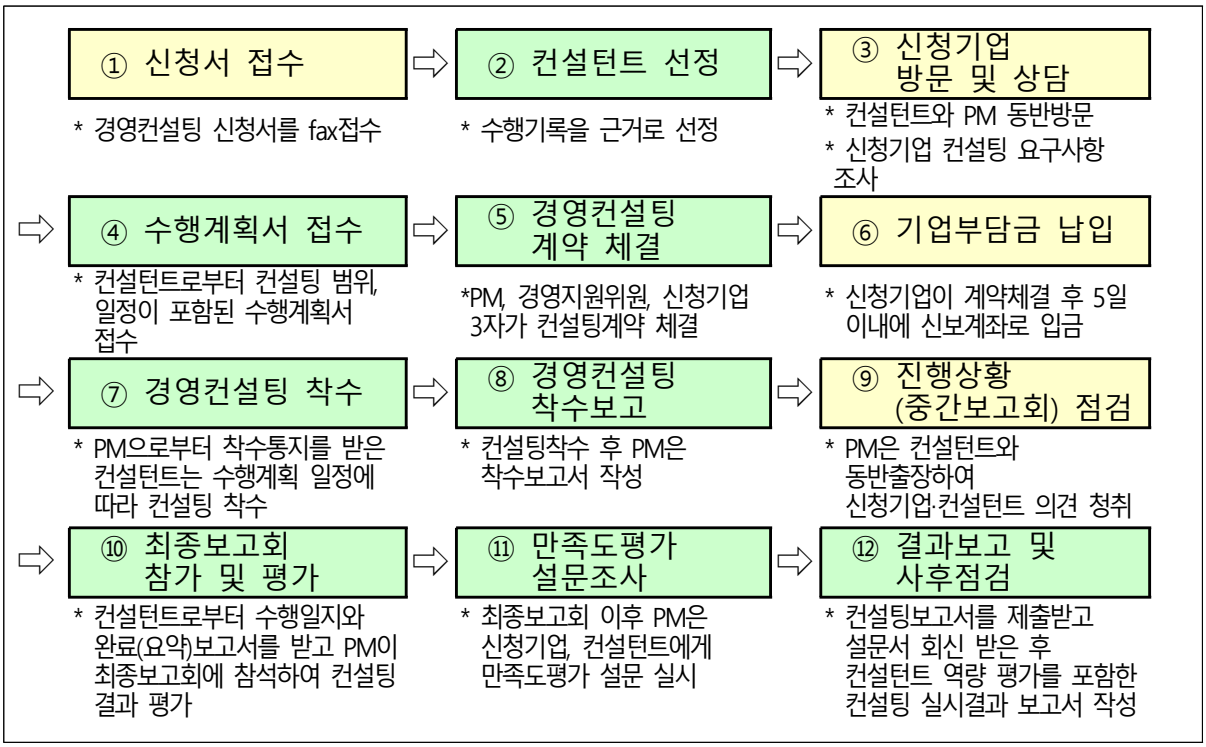
- **(컨설팅)** ’78.4월 경영지도 업무 도입 후 창업컨설팅, 신용관리컨설팅(’14.10월 특허 출원), 중소기업형 IPO・M&A컨설팅 등 다양화하여,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06.7월 도입)
- **(창업종합지원)** 유망 창업기업이 본격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융자 금융 및 컨설팅, 멘토링 등 비금융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7.1월 도입(’17.3월 기획재정부 협업과제 선정)
- **(신용카드수수료)** ’02.10월 중소기업의 편익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신용카드 납부 권고(’09.7월) 및 감사원의 카드수납 확대 요구(’10.8월)에 따라 활성화 추진 중
- **(위탁보증 수수료)** 금융위의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 발표(’15.11.4.)의 후속조치로 新위탁보증 제도를 도입(’17.6월),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탁보증 10조원 공급 발표(’20.04.2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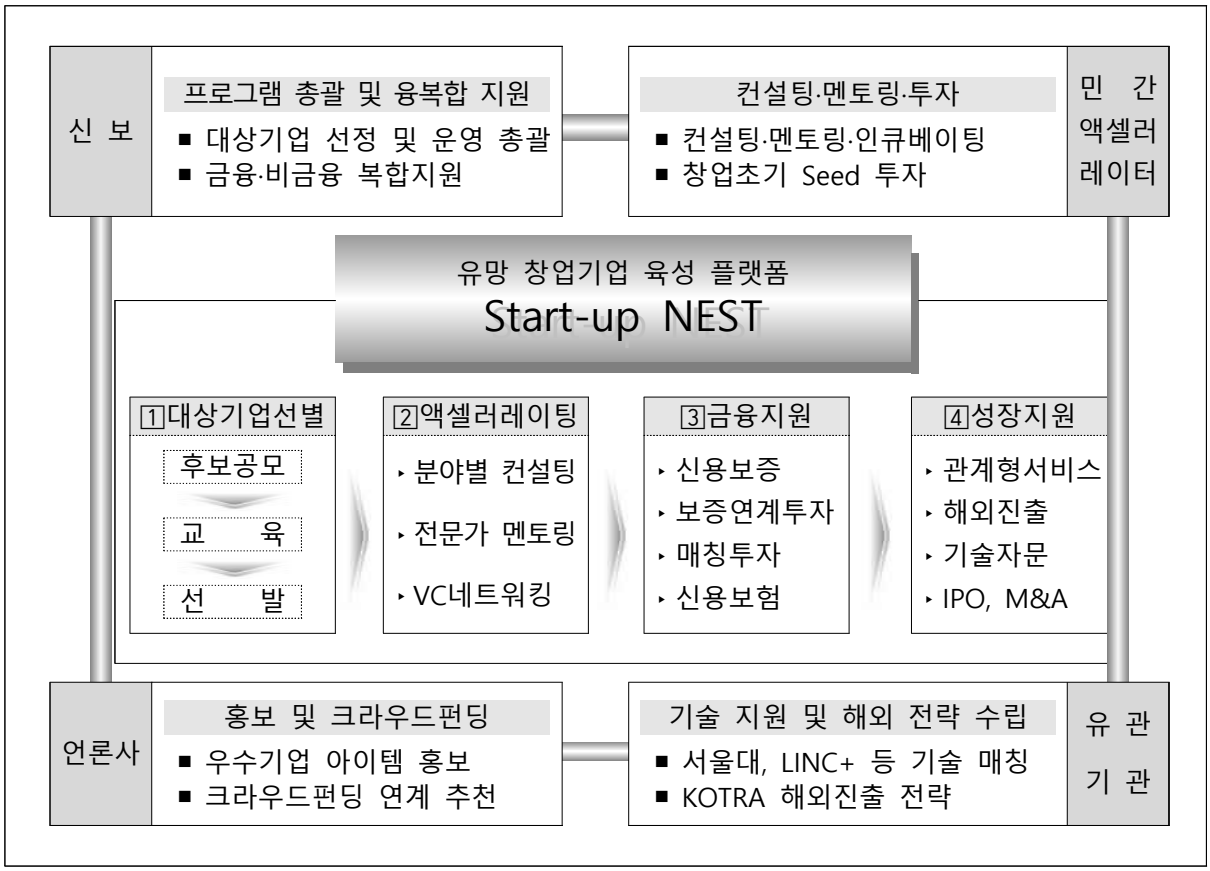
① 컨설팅



②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추 진 절 차	담당기관
기업등록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기업일반현황・생산품・재무정보 등을 온라인 메인비즈인증시스템으로 신청 및 정보입력)	중소기업
⇩	
온라인 자가진단작성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개별기술수준평가)	
⇩	
현장평가 신청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	
⇩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현장평가수수료 55만원)	신보, 기보, 한국생산성본부
⇩	
확인서 발급 (현장평가점수 700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③ 창업종합지원


신 보
프로그램 총괄 및 융복합 지원
■ 대상기업 선정 및 운영 총괄
■ 금융·비금융 복합지원
컨설팅·멘토링·투자
■ 컨설팅·멘토링·인큐베이팅
■ 창업초기 Seed 투자
민 간 액셀러레이터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1대상기업선별
후보공모
교 육
선 발
2액셀러레이팅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VC네트워킹
3금융지원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매칭투자
신용보험
4성장지원
관계형서비스
해외진출
기술자문
IPO, M&A
언론사
홍보 및 크라우드펀딩
■ 우수기업 아이템 홍보
■ 크라우드펀딩 연계 추천
기술 지원 및 해외 전략 수립
■ 서울대, LINC+ 등 기술 매칭
■ KOTRA 해외진출 전략
유 관 기 관

사 업 명
(7) 보증연계투자 (24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8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보증연계투자	59,231	60,000	60,000	56,565	56,500	△3,500	△5.8

4.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 신용보증 신청기업이나 이용기업이 직접투자를 신청할 경우, 사업전망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보증연계투자

○ 추진경위 : '13.5.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되어 '13.8.28.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2010년 운용, 2011년~2013년 중단, 2014년 재개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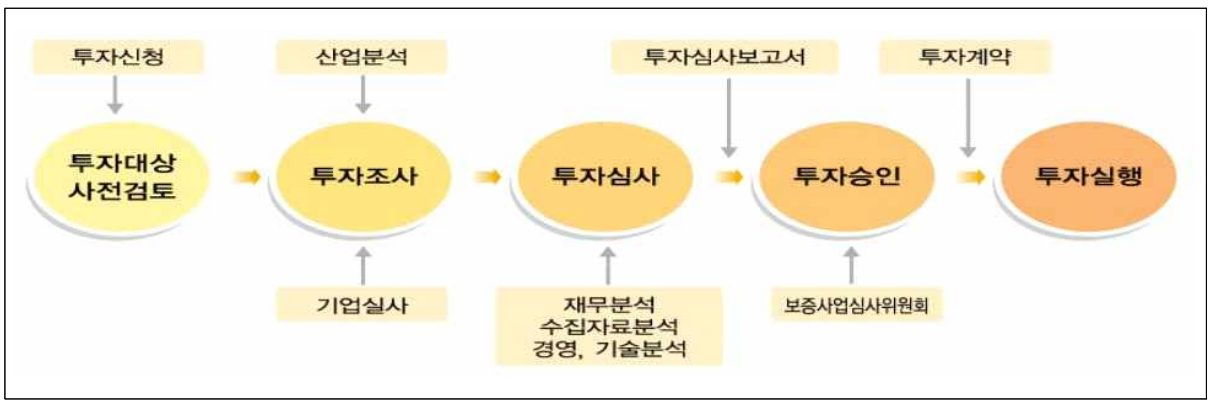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보증연계투자 이용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미래성장성평가 (2431-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9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미래성장성 평가	146	1,695	1,695	2,465	2,407	712	42.0

4. 사업목적·내용

○ **(미래성장성평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적극 부응하고,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수기술과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결합한 미래성장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회사 등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강화를 위해 금융연수원 등과 협업을 통한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무능력 강화 및 심사 인프라 확충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평가기관 지정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미래성장성평가)** 발명의평가기관(특허청 고시 제2018-24호, ’18.9.28.) 및 기술평가기관(특허청 공고 제2020-52호, ’20.3.4.)으로 지정 등
-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8년부터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미래성장성평가

양적성장성		질적성장성		지속성장성		미래성장성 평가등급
미래경영평점[1]	+	기술역량평점[2] 혁신역량평점[3]	+	신용평점	=	

1) 미래 3개년 매출액 및 재무제표 추정을 통한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측정

2) 기업의 기술성장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과 기술경쟁력을 측정한 값의 합을 등급으로 표시
→ **질적(기술) 성장가능성 평가**

3)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성과 사회적가치를 창출 역량을 측정

②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추진목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기술금융의 안정적 정착	
추진방향	대상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부문	[금융권/일반] 기술금융 전문교육	[신보 내부직원] 기술금융 역량강화
추진과제	■ 기술금융 입문과정 개설 –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 기술금융 기초교육 실시 – 기술금융에 대한 기본역량 및 적응력 제고 ■ 기술금융 전문자격과정 개설

사 업 명
(9) 프론트원운영 (24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12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프론트원운영	-	4,219	4,219	6,568	6,568	2,349	55.7

4. 사업목적·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창업 전문 보육공간인 “프론트원(FRONT1)”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확산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추진경위 :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발표('18.08.08. 관계기관 합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이차보전지원 (2431-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13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이차보전지원	67,844	-	25,130	24,453	24,453	24,453	-

4. 사업목적·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추진경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19.)」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실시('20.4.1.)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20.4.29.)」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처리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프로그램' 실시('20.5.12.)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이차보전 프로그램' 실시('20.9.2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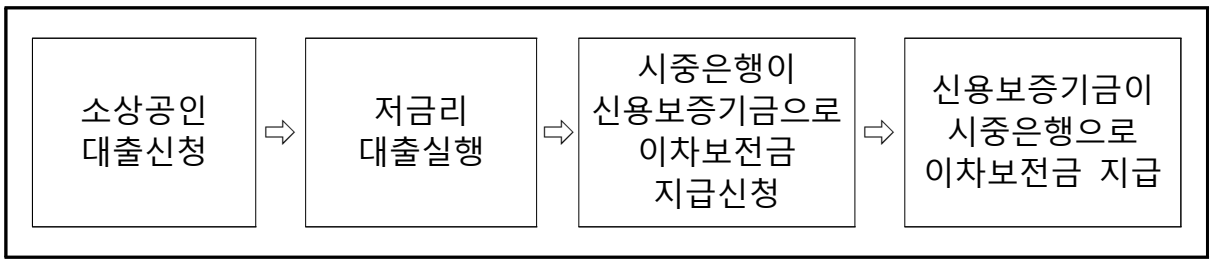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 팩토링금융 (2431-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14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팩토링금융	-	39,750	39,750	298,771	59,625	19,875	50.0

4.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등**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사업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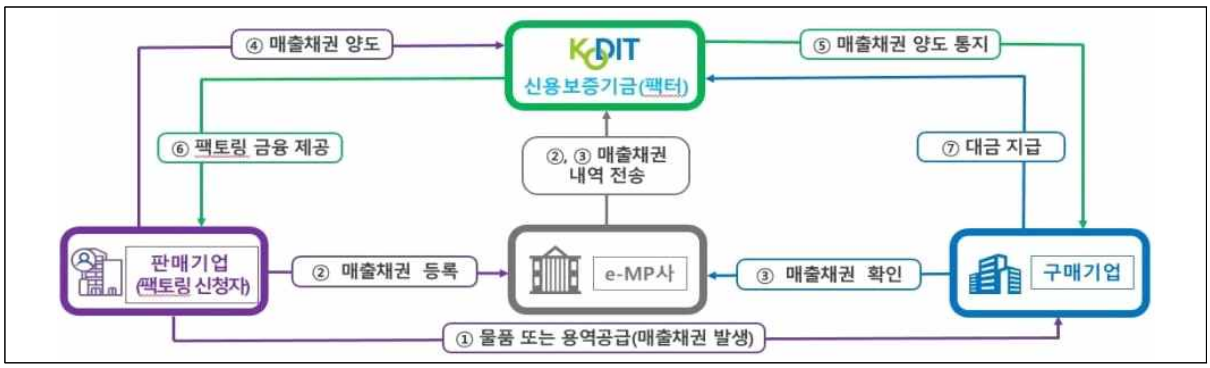
○ 추진경위

- **'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02.19.)
  :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선정**('20.02.26.)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신설
-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20.04.23.관계부처합동)
  : 2·3차 자동차 부품업체를 원청업체 부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효력 상실 리스크를 제거한 팩토링 신규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팩토링금융 이용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신용정보(정보화) (2431-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15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신용정보 (정보화)	-	4,000	4,000	3,209	3,209	△791	△19.8

4.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금융, 비금융 데이터 제공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쟁력 향상 및 성장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추진경위

- ('18.09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태적 경영활동 모니터링 체계연구 (NICE평가정보)
- ('18.10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수행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03월) 상거래 DB구축 기관 선정 (금융위원회)
- ('20.01월)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Paydex) 모형 개발 (사업자: 엠씨지컨설팅)
- ('20.03월) 신용정보업 면허 취득 (금융위원회)
- ('20.06월)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자: 넥스트아이앤아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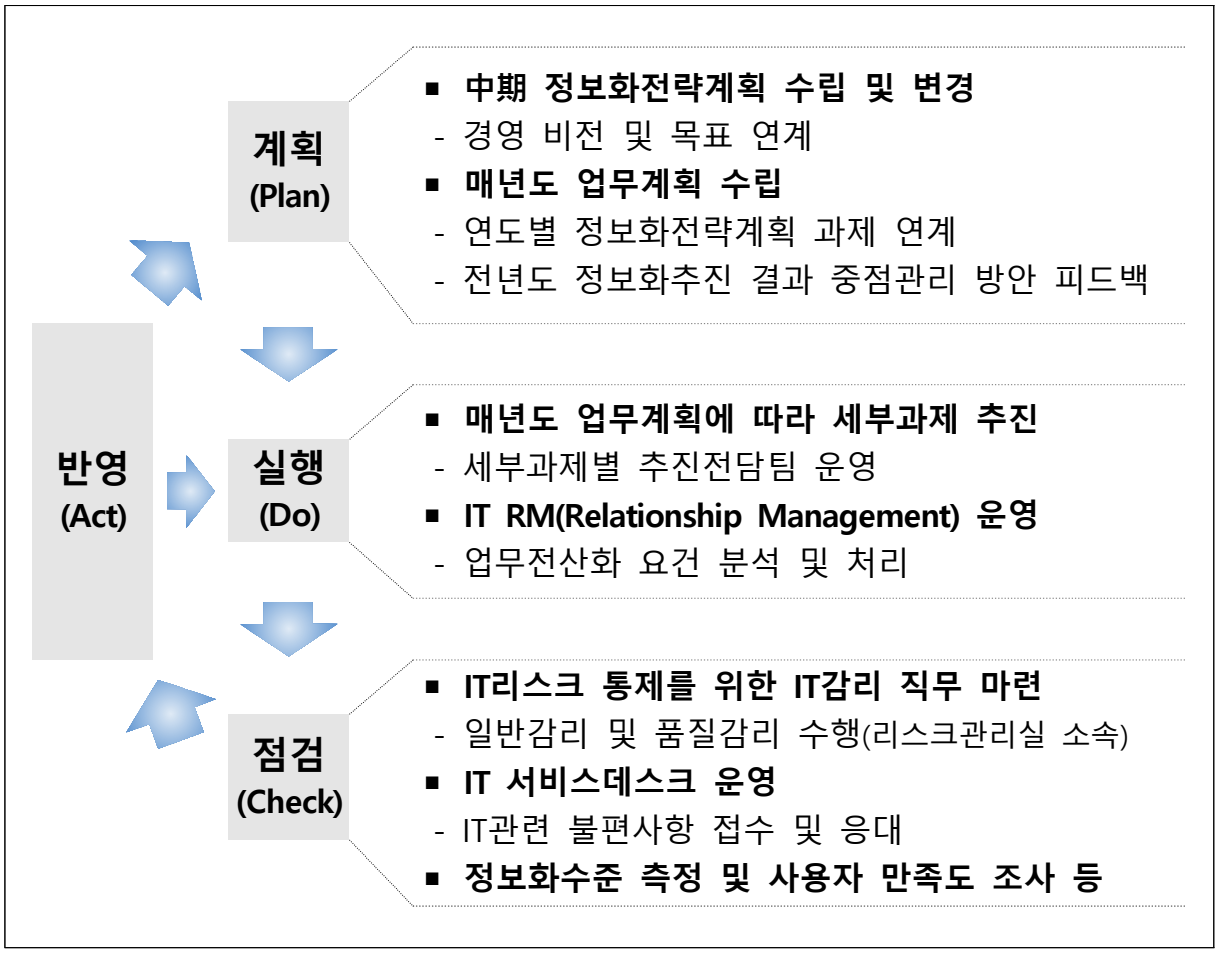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정보이용자(일반국민, 기업, 금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
(Plan)
■ 中期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 경영 비전 및 목표 연계
■ 매년도 업무계획 수립
- 연도별 정보화전략계획 과제 연계
- 전년도 정보화추진 결과 중점관리 방안 피드백
실행
(Do)
■ 매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추진
- 세부과제별 추진전담팀 운영
■ IT RM(Relationship Management) 운영
- 업무전산화 요건 분석 및 처리
점검
(Check)
■ IT리스크 통제를 위한 IT감리 직무 마련
- 일반감리 및 품질감리 수행(리스크관리실 소속)
■ IT 서비스데스크 운영
- IT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응대
■ 정보화수준 측정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반영
(Act)

사 업 명
(13)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243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16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	370,100	370,100	366,126	366,126	△3,974	△1.1

4. 사업목적·내용

○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보증) - 시중은행(대출) - 정부(재정출연) 간 역할분담으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수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발표('20.04.22. 관계부처 합동)로 소상공인 위탁보증(10조원)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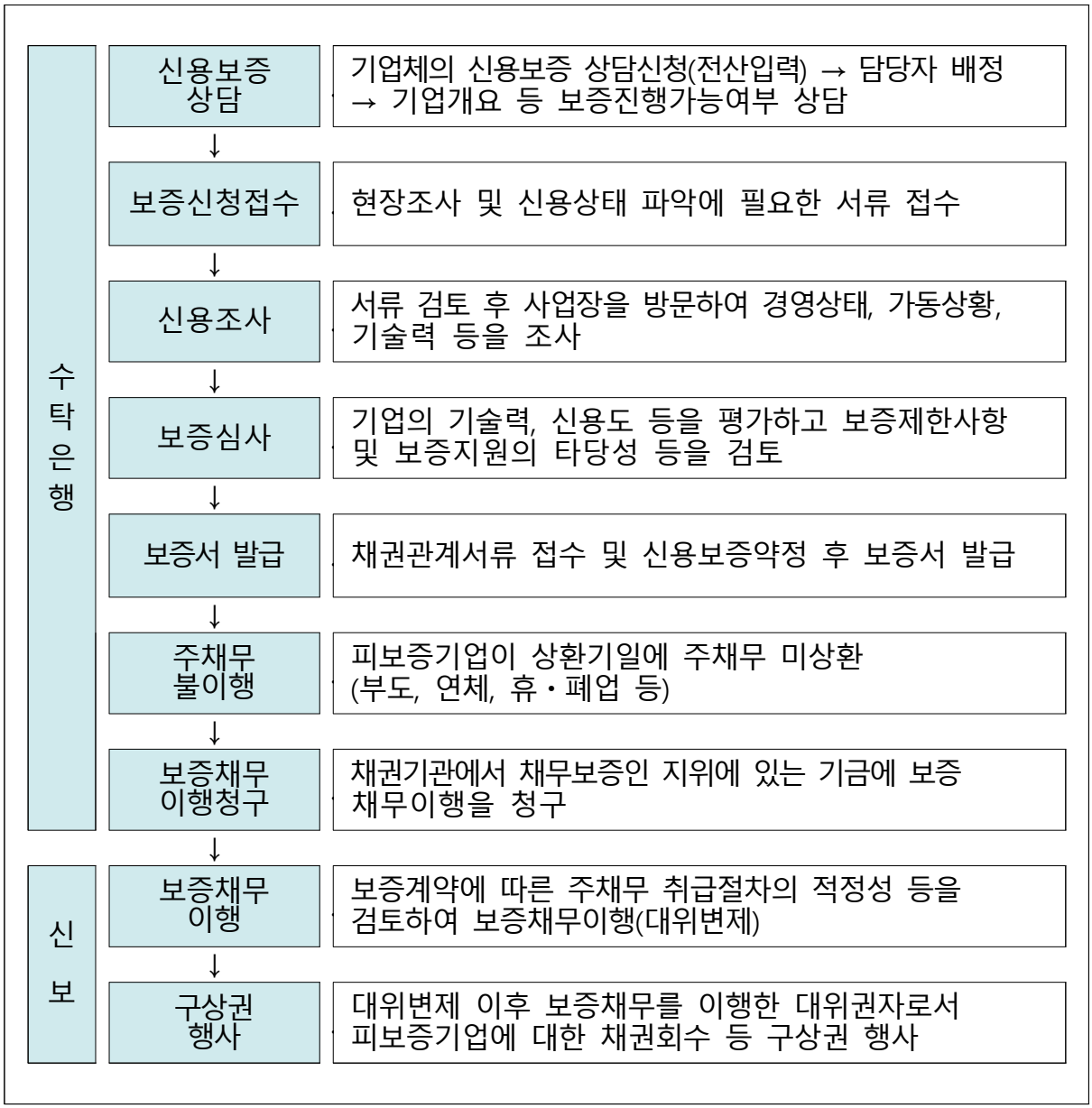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보증 이용 기업 및 채권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탁은행
신보
신용보증 상담
기업체의 신용보증 상담신청(전산입력) → 담당자 배정 → 기업개요 등 보증진행가능여부 상담
보증신청접수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서류 접수
신용조사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 가동상황, 기술력 등을 조사
보증심사
기업의 기술력, 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보증서 발급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주채무 불이행
피보증기업이 상환기일에 주채무 미상환 (부도, 연체, 휴·폐업 등)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기관에서 채무보증인 지위에 있는 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보증채무 이행
보증계약에 따른 주채무 취급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구상권 행사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사 업 명
(14) 신보IT운영(정보화) (24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4	301
명칭	신용보증금융지원	신보IT운영	신보IT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신보IT운영 (정보화)	17,384	14,149	14,149	18,636	16,262	2,113	14.9

4. 사업목적·내용

○ 전산장비 구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원활하게 처리

○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신용보증, 구상권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인건비 (3378-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8	1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신용보증기금)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인건비	241,396	252,170	252,170	283,030	261,210	9,040	3.6

4.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기금관리비 (3378-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8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기금관리비	96,190	99,481	99,481	120,458	100,647	1,166	1.2

4. 사업목적·내용

○ 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 선급법인세 (3378-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8	202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신용보증기금)	선급법인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선급법인세	5,029	8,735	8,735	8,735	7,703	△1,032	11.8

4. 사업목적·내용

○ 법인세법에 따라 CD, 채권 등 여유자금 운용 시 납부하는 선납세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 통화금융기관예치 (9702-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3,474,047	4,321,184	4,384,699	3,430,478	3,694,390	△626,794	△14.5

4.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2-9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신용보증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21,000	902,000	898,431	3,230,101	3,706,295	2,804,295	310.9

4.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연기금투자풀) 예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금융회사등에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 국채매입 (9702-97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신용보증기금)	국채매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국채매입	803,324	586,560	584,239	456,863	586,560	-	-

4.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국채 매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1) 국채외채권매입 (9702-97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5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신용보증기금)	국채외채권매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국채외채권 매입	655,195	428,640	426,944	689,302	428,640	-	-

4.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국채외채권(지방채, 금융채, 통안증권 등) 매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기타유가증권매입 (9702-97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7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신용보증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확정(B)	(B-A)	(B-A)/A
기타유가증권매입	176,255	112,800	112,354	208,394	112,800	-	-

4. 사업목적·내용

○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타유가증권 매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